일련번호	1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등 3개 부서 (가과 등 3개 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시행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나과, 다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나과, 다과)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및 나과, 다과(이하 “가과 등”이라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도로 및 건축 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1] 퇴직공제에 가입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통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하고, 같은 조항 제3호에 따르면 사업장의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1) 2024. 1. 1.이후 발주가 입찰 공고한 사업장부터 적용

또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경기도 라과(이하 “라과”라 한다)는 2025. 2. 17. 건설근로자법 개정(확대적용)에 따라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도입이 의무 시행에 따라 전자카드제 대상사항에 대해 시행 권고토록 안내하였으며, 2025. 11. 25. 건설공사 전자카드 발급 사용율을 통보하면서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전자카드제도의 취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는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공문을 건설본부를 비롯한 도내 건설공사 발주부서에 송부하였다.

따라서 가과 등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 발주 의뢰 시 전자카드제를 적용하여 발주하고 수급인이 현장에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지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 등은 별지의 [별표]와 같이 “2024년 ㄱ 계약” 등 2024. 1월 이후 발주한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개의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현장에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누락 우려와 건설공사의 인력관리의 투명성 등을 저해하였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가과 등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적용 대상 및 여부, 운영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급인에게 전자카드제 이행사항을 안내하는 등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건설본부장은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 전자카드제 시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지]

[별표] 전자카드제 미시행 건설현장 내역 “생략”

일련번호	2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등 3개 부서 (가과 등 3개 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통 보

제 목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나과, 다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나과, 다과)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및 나과, 다과(이하 “가과 등”이라 한다)는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등에 따라 도로 및 건축 시설공사 등 공공건설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하 “경기도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공공건설사업[2]으로서 총사업비가 40억 원 이상이고 사업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경기도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건설사업의 사업시행기관[3](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은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원칙적으로 계획 및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각 단계에 따라야 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를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공공건설사업이란 경기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3) 사업시행기관이란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예산을 교부・보조・지원 및 재배정을 받아 해당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기관을 말한다.

또한 경기도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시행기관은 계약체결 결과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이하 “낙찰차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기관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를 감액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낙찰차액 감액 조정 시 그 변경 내역을 사업관리기관[4](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총괄부서[5](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경기도 라과(이하 “라과”라 한다)는 202○. ○. ○.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점검결과 알림” 문서로 경기도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길 바란다고 통보하였고, 202○. ○. ○. “2026년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운용 실태 점검 결과 알림”시 사업추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건설본부를 포함한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시행기관에 통보하였다.

따라서 가과 등은 경기도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적용받는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계약 등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시 그 금액을 총사업비에서 감액하고 변경 내역을 관리기관 및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 등은 [표]와 같이 “경기도 ㄱ센터 조성” 등 ○○개의 사업에 대하여 설계, 공사 등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백만 원을 감사일 현재(2026. 7. 10., 이하생략)까지 감액 조치하지 않았다.

[표]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공건설사업 낙찰차액 미감액 내역 “생략”

그 결과 낙찰차액이 적기에 감액 및 회수되지 못하여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4) 사업관리기관이란 공공건설사업에 필요한 예산 또는 기금을 사업시행기관에 교부·보조·지원 및 재배정하는 경기도 소속 부서·기관을 말한다.
5) 사업총괄부서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가과 등은 설계용역 발주 전 총사업비 관리절차에 대한 확인과 이행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과 함께 사업 초기 단계에서 공종별 총사업비 기준을 관리기관과 명확히 공유·관리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본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한 사항으로 공종별 기준금액을 확정하여 설계 낙찰차액을 반영한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을 관리기관 및 총괄부서에 제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 설계 용역 추진 시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사업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건설본부장은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낙찰차액에 대하여 사업관리기관(마과 등)과 협의하여 자율조정 등을 통하여 감액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3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나과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체결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나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및 나과(이하 “가과 등”이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ㄱ 도로확장공사” 등 ○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입찰에 부치는 경우 지방계약법 사행령 제20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4장-제3절-2.-다-2)-다)-(1)·(4)에 따르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할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 계약집행기준 제1장 <별첨양식2>를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하고, 발주(사업)부서는 발주 전에 기술보유자와 낙찰률 등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 범위·하도급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뢰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3절-2.-다-2)-다)-(3)에 따르면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기술보유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 등은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체결시 기술사용료 부분을 명확히 정하고 그에 따른 기술사용료를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계약의뢰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 등은 별지의 [별표]와 같이 “ㄴ 도로확포장공사” 등 ○개 공사는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체결시 기술사용료를 명시하지 않았고, “ㄷ 개선사업”등 ○개 공사는 설계내역서에 기술사용료를 반영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원도급자와 기술보유자 간의 공법 사용에 대한 분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건설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가과 등은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에 대해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기술사용료 등을 명확히 반영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건설본부장은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신기술・특허협약 체결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지]

[표]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사용료 미적용 공사 내역 “생략”

일련번호	4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나과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통 보

제 목 **낙석방지울타리 설계 및 설치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나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및 나과(이하 “가과 등”이라 한다)는 「도로법」 등에 따라 “ㄱ 도로확포장공사” 등 ○○개 사업에 대하여 공사 및 설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구조규칙”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르면 낙석, 붕괴, 파랑, 바람 또는 적성 등으로 인하여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구조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는 울타리, 옹벽, 방호시설, 방풍시설 또는 제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5. 낙석방지시설에 따르면 도로

절개면의 낙석, 토사붕괴 등으로 인한 교통 장애, 도로구조물의 손상, 재산 및 인명상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하며, 그 중 낙석방지울타리는 지주와 지주 사이를 와이어 로프와 철망 등으로 연결하여 비탈면으로부터 떨어지는 낙석의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낙석으로 인한 피해는 막는 시설로 절개면 경사가 완만하여 낙석의 튀는 높이가 낙석방지울타리 높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절개면, 경사가 급한 절개면에서 낙석이 방지울타리 밖 도로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낙석방지방과 함께 설치, 토사가 혼합되어 낙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절개면은 옹벽과 함께 설치하고, 낙석이 낙석방지울타리를 뛰어 넘지 않도록 적정한 높이와 이격거리를 결정한 후 울타리의 허용범위 내에서 흡수가능 에너지를 결정하여 낙석에너지와 비교하여 설계하며 기초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4. 12. 13.「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중 [별표 8] -낙석방지시설편-에 대하여 더 큰 규모의 낙석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낙석방지시설 요구 성능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하였고 주요 개정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낙석방지울타리의 지주 규격

와이어로프		철망		중간지주			단부	흡수 가능 에너지(kJ)
지름	간격 (mm)	지름	간격 (mm)	단면치수 (mm)	매입길이 (mm)	표준간격 (mm)		
Ø18	200~300	Ø4~5	50×50	H150×75×5×7	700 이상	2000~3000	H150×150×7/10 □150×4.5	48
Ø18	200~300	Ø4~5	50×50	H200×100×5.5×8	700 이상	2000~3000	H175×175×7.5/11 □175×5.0	56
Ø18	200~300	Ø4~5	50×50	H200×100×5.5×8	700 이상	2000~3000	H200×200×8/12 □175×5.0	61
Ø18	**200~300**	**Ø4~5**	**50×50 (2중망)**	**□150×4.5**	**700 이상**	**3000**	**□150×4.5**	**100~110**

주) 1. 단부의 지주와 버팀재는 같은 규격을 사용한다.
2. 흡수 가능 에너지 계산은 지주간격 2.0m, 와이어로프 간격 30㎝를 기준으로 하였다.
자료:「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별표 8] -낙석방지시설편- 중 일부 발췌

따라서 가과 등은 공사 중이거나 설계 완료된 사업에 대해 개정된 낙석방지시설

의 설계 기준 검토하여 필요시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낙석방지울타리를 재설계 및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 등은 [표 2]와 같이 “ㄱ 도로확포장공사” 등 ○○개의 공사에 대하여 2024. 12. 13. 개정된 낙석방지울타리 기준에 대한 반영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2] 낙석방지울타리 설계 현황 “생략”

4. 관계기관 등 의견

가과 등은 공사진행 단계, 설계완료 시기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 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관계 법령 및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건설본부장은

○ 기 설계된 낙석방지울타리에 대하여 변경된「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에 따라 강화된 설치 기준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5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등 3개 부서 (가과 등 3개 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건설공사 하자만료검사 업무처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나과, 다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나과, 다과)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나과 및 다과(이하 “가과 등”이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시에는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6]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하자검사를 하는자는 담보책임의

6)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11절 3.하자검사 나.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 등은 계약부서인 관리과로부터 통보받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예정 공사계약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 등은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 되기 전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별지의 [별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하자검사 현황" 과 같이 ○○○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하자 발생 여부를 적기에 확인하고, 하자가 발견된 경우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수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지연시켜 공사품질 및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자검사 제도의 취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가과 등은 일부 준공 건설공사에 대해 업무 미숙 및 착오 등의 사유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적기에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건설본부장은

○ 앞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예정 공사에 대한 최종 하자검사가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대상 및 만료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지]

[별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하자검사 현황" "생략"

일련번호	6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나과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의무 미준수**

소관기관(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나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나과(이하 “가과 등”이라 한다)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 공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발주청[7]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

7)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시간 및 내용 등”에 따르면 교육훈련의 종류는 기본교육, 전문교육으로 구분되며, [표1]과 같이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은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전 기본교육(3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전문교육(최초교육, 35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1] 교육훈련의 대상, 시간 및 이수시기

교육 종류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기본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전문교육 (최초교육)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자료 : 관련 법령 재구성

따라서 가과 등은 소속 직원이 건설공사 감독 등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 등은 소속 직원이 건설공사 감독 등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육 이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교육 미이수자에게 교육 이수를 독려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의 [별표] “교육훈련 미이수 현황”과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소속 직원 ○○명에게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그 결과 건설기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고, 건설공사 감독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적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가과 등은 전입 직원에 대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여부 확인이 일부 미흡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전입자 및 신규 업무담당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교육 이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교육·훈련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건설본부장은

○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소속 건설기술인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현재 교육 미이수자 ○○명에 대해서 조속히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지]

[별표] 교육훈련 미이수 현황　"생략"

일련번호	7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302,05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나과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나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나과(이하 “가과 등 2개 부서”라 한다) 소속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및 「경기도 공무원 복무규칙」 등에 따라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 등의 휴가를 부여받고 근무상황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무급휴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자녀[8]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인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

8)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로 한다고 되어 있다[9].

[표 1] 가족돌봄휴가 사유

연 번	사 유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료:「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발췌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Ⅷ-4-라-(6)에 따르면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어린이집등의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표 2]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사혁신처 누리집 "복무제도 안내"의 "자주하는 질문" 중 가족돌봄휴가 관련 답변 내용에 따르면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알림장, 학교공문,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표 2] 가족돌봄휴가 휴가(유급) 승인시 증빙서류

연번	증빙서류
1	어린이집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2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등
3	유급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발췌

따라서 소속 공무원이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알림장, 학교공문,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등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9) 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24. 7. 2. 대통령령 제346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복무규정"이라 한다)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인 경우에는 연간 2일까지 유급휴가로 하며,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와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휴가로 한다고 되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음

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해당 공무원의 부서장 등 결재권자는 유급 가족돌봄휴가 인정 요건 등을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한 후 가족돌봄휴가 사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에 따라 가과 등 2개 부서의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내역(20●●년~20●●년 ●월)을 확인한 결과 [표 3]과 같이 □급 A는 배우자 병원 동행, ○급 B는 자녀 등하교를 이유로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고, ○급 B, ○급 C는 특정 일자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증빙자료를 감사일 현재(20●●년 ●월)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표 3] 가족돌봄휴가 사유 등 부적정 내역 "생략"

그 결과 긴급하게 가족돌봄이 필요한 사유 등에만 사용해야 할 특별휴가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었고, 연가로 사용되어야 할 휴가가 유급 특별휴가로 부여되면서 연가보상비 등 총 302,050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었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증빙서류 첨부 및 사유 해당 여부를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복무관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으며 향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건설본부장은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해 지속적인 복무 관리와 교육을 시행하고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위반하여 [표 3]과

같이 가족돌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A 등 ■명에게 연가보상비 등 총 302,050원을 회수하시고,

○ 8시간 미만 가족돌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B는 연가일수에서 차감하는 등 근무상황부를 정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8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52,96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나과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당직근무시간 내 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수령**

소관기관(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나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나과(이하 “가과 등 2개 부서”라 한다) 에서는「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경기도 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고 있으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한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르면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상황근무 등을 포함한다)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경기도 공무원 복무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 종료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일직은 토요

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고 되어 있으며,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제5장에 따르면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는 당직근무 시간 내 초과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 등 2개 부서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관리해야하며, 소속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를 실시한 후 이에 대한 당직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으므로 당직 근무시간 내에는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입력·체크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 등 2개 부서 소속의 당직자 ■명은 [표]와 같이 당직근무일 또는 당직근무 후 다음날 정상근무가 개시되기 전인 당직근무시간에 개인별로 ■회~■회, 총 ■회의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부당하게 입력·체크한 사실이 있다.

[표] 당직근무 시간 내 시간외근무수당 중복수령 현황 "생략"

그 결과 가과 등 2개 부서 당직자 ■명은 당직근무 후 지급받은 당직비 이외에 총 52,96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하여 부적정하게 지급받았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당직 익일 초과근무시간 중복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초과근무시간을 착오 입력하였고 고의성 없이 발생한 사항으로 중복 지급액 환수 조치 등에 성실히 따르겠으며 향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건설본부장은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해 지속적인 복무 관리와 교육을 시행하고 당직근무시간 내 시간외근무수당의 중복지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경기도 공무원 복무규칙」,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여 [표]와 같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 수령한 A 등 ■명에게 중복 지급된 총 52,96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9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가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건설본부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소속부서의 조리, 청소 분야 등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이하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9조의17 제4항에 따르면 공무직원 채용시험 담당 부서는 채용 공고에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 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9조의21 제2항에 따르면 채용 공고에 부정 합격자 합격 취소에 대한 내용[10]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13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시험의 경우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합격의

10)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거짓,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그 밖에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 등을 하여 합격한 자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취소, 채용 시 결격사유 등은 같은 규정 제9조의17, 제9조의21, 제10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표 1] 결격사유(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제10조)

1. 피성년후견인 [전문개정 2023.8.28.]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써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자료:「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발췌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간제근로자(조리, 청소 등) 채용 공고문을 작성하면서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에 따라 채용 공고 내용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채용시험 가점(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사항 및 동점자 처리 기준을 공고문에 누락하였으며, 채용 공고문의 기타 유의사항에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는 등의 일반적 문구만 있을 뿐, 부정 합격자 합격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제10조 결격사유 대상이 2023. 8. 28. 개정을 통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에서 '피성년후견인' 으로 변경되었는데도 20●●년 공고문의 경우 결격사유를 작성하면서 개정 전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여 공고하였다.

[표 2] 연도별 채용 공고문 작성 부적정 현황 "생략"

그 결과 가과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시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을 상세히 살피지 않아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가점 및 동점자 처리 기준 등을 누락하여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채용 업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20●●년부터 채용 공고문에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을 누락하고 부정 합격자 합격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항, 20●●년 공고문에 결격사유를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사용한 사항 등에 대하여 향후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동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건설본부장은

○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10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가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수의계약 배제업체 지정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건설본부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 ■■■■(■■■■■ ■ ■■■) ■■■■(■■■) ■■”(이하 “■■■ ■■”이라 한다) 계약을 추진하였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계약집행

기준” 이라 한다)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 1.-나.-9)에 따르면 물품의 경우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표 1]과 같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등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이하 “낙찰자” 라 한다)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연번	내용
① ~ ⑤	(생략)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 ⑩	(생략)

자료: 계약집행기준 일부 발췌

따라서 가과는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추진할 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낙찰자를 3개월 간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지정하고,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본청・직속기관 등)가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과는 ■■■ ■■ 계약건을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20☆☆. ☆. ☆. 공고하고 20☆☆. ☆. ☆. 개찰하였는데, [표 2]와 같이 개찰 결과 1순위인 낙찰자 □□(대표자: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고 20☆☆. ☆. ☆. 낙찰 포기각서를 제출했는데도 3개월 간 수의계약 배제업체 지정을 하지 않았다.

[표 2] ■■■ ■■ 계약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추진 내역 “생략”

이로 인해 경기도농업기술원 나과는 □□가 수의계약 배제업체인 줄 인지하지

못하고, “●●●●●●(●●●, ●●●●●●) ●●” 계약 건을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절차를 통해 □□로부터 20☆☆. ☆. ☆. 견적서를 제출받아 20☆☆. ☆. ☆.자로 ◎◎,◎◎◎천 원에 수의계약 체결하였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가과는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건설본부장은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11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가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가과)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건설본부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표]와 같이 “■■■■ ■■■■ ■■■■ ■ ■■■■■■■공사(■■)”(이하 “■■■■ ■■■ 공사”라 한다) 계약을 추진하였다.

[표] ■■■■ ■■■ 공사 계약 현황 “생략”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이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범위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과는 ■■■■ ■■■ 공사 시공사인 □□(주)(대표자: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 준공기한인 20☆☆. ☆. ☆.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시공사인 □□(주)가 건설본부의 계약이행촉구(4회)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 ■■■ 공사 시공사 계약 미이행에 따른 공사 계약해지 검토보고[11]"를 20☆☆. ☆. ☆. 작성하고, 같은 날 □□(주)에게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촉구에 않은 경우[12]'를 계약 해지사유로 명시하여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건설본부는 □□(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해당되어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범위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2026. 7. 10.)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지 않았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가과는 계약상대자의 소송 제기 등 현안업무에 대응함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미이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현재 청문 절차를 시작하였다며 조속히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건설본부장은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라며,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11) 건설본부 가과-○○○○(20☆☆. ☆. ☆.)
1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3.-가.

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12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A부 등 7개 부서 (A부 등 7개 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기관경고,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연구실 설치·운영 및 약품 등 관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A부, B부, C부, D부, E부, F부, G부)

조치기관(부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A부, B부, C부, D부, E부, F부, G부)

1. 업무 개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A부(이하 “A부”라 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B부(이하 “B부”라 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C부(이하 “C부”라 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D부(이하 “D부”라 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E부(이하 “E부”라 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F부(이하 “F부”라 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G부(이하 “G부”라 한다)은 「보건환경연구원법」 및 각 법령에 규정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연구,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연구실 설치·운영 등 안전수칙 위반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9호)」 제3조는 연구실 설치·운영기준 및 고위험·중위험·저위험 연구실에 대한 적용기준을 [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1]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일부 발췌 "생략"

그리고「연구실 설치·운영기준 이행 안내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Ⅱ.-1.-출입통로 설치 기준에는 연구실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통해 사고피해 최소화 및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모든 연구실에 필수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사람 및 연구장비·기자재 출입이 용이하도록 주 출입통로 적정 폭 및 간격을 확보하고, 신속한 대피 또는 진입을 위하여 연구장비, 물품 등을 적재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A부 등 7개 부서는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바닥면에 안전구획을 표시하고 주변에 장비, 물품 등을 적재·방치하지 않아야 하며, 시약장 내 물질의 유통기한 관리, 연구실 내에 음식물 보관 및 섭취 금지 등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G부는 연구실안전법상 '고위험연구실'에 해당하여 연구실 바닥면에 안전구획 표시를 필수로 하여야 하는데도 안전구획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 비상시 대피를 방해하고 실험기구 파손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게 관리하였다.

또한 G부는 연구실 사고 등의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주 출입통로에 연구장비, 물품 등을 적재하거나 배치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공간 등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표 2]와 같이 실험·검사에 사용하는 시험관, 플라스크 등의 유리기구를 연구실 출입구 바로 옆에 선반을 두어 거치해 놓았으며, 주 출입통로에 비닐 가림막을 설치한 4단 진열장을 배치해 놓았다.

[표 2] G부 연구실 출입통로 실험기구 상태 "생략"

그리고 C부 등 5개 부서[13]는 시약장 내에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폐기하거나

즉시 폐기가 곤란할 경우 별도로 식별하여 분리・보관하여야 하는데도 [표 3]과 같이 최소 4일에서 최대 6년이 지난 약품과 현재 사용 중인 약품 등을 별다른 식별 표시나 분리 보관 없이 시약장에 함께 그대로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약품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보관・관리하였다.

[표 3] 유효기간 경과 약품 및 폐약품 일부 사진 "생략"

더욱이 A부, C부는 약품의 유효기간을 제조일자로 잘못 알고 관리하기도 하였으며, 시약장 내에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뒤쪽에, 현재 사용하는 약품을 앞쪽에 배치하는 등 약품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감사일 현재까지(2026. 7. 10., 이하생략) 확인하지 못하고 부적정하게 관리하였다.

게다가 G부는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표 4]와 같이 연구실 내에 비치한 일반 냉장고에 요플레, 우유 등의 음식물을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음료는 개봉되어 음용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연구실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연구실 안전관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다.

[표 4] G부 연구실 내 음식물 비치 사진 "생략"

그 결과 기본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약품 등 관리 부적정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다.

13) C부, E부, F부, G부, A부

또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행정안전부)」 Ⅱ-2.-다.-1), 3) 및 4)에 따르면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을 소모품의 종류로 정의하고, 주요 소모품은 소모품 대장에 수불상황을 기록·관리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 중인 소모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운용부서에 불출하여 관리 중인 소모품에 대하여는 사용 공무원이 관리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소모품의 경우 재고운용수준을 정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A부 등 7개 부서는 약품 등을 취득·관리하는 경우 연간 소요량 및 이월재고량 등을 파악하여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검사 방법 종료(변경)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약품 등을 방치하거나 약품별로 혼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불상황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재고 운용수준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2023년부터 작성한 약품 등의 입·출고 재고 수량 등을 기록하는 물품수불대장(이하 “수불대장”이라 한다)을 확인한 결과 A부 등 7개 부서[14]는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 3,000개의 약품 등을 구입·사용하면서 물품납품 시 작성하는 물품검수조서상의 납품년월일과 수불대장의 입고일자를 감사일 현재까지 불일치하게 기록하였다.

또한 A부 등 7개 부서는 발주한 약품 등의 납품이 수일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 거래명세서상의 일자와 실제 수령 일자를 임의로 정하여 입고일자로 기록하는 등 명확한 기준 없이 수불대장을 관리하였고, 실제 입고일자와 기록된 입고일자 간 최대 63일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약품 등의 재고를 부적정하게 관리하였다.

그리고 D부, A부는 2023년 이전에 입고하여 검사 종료 및 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감사일 현재까지 약 4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은 약품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시약장에 그대로 보관하였다.

아울러 F부는 전년도 12월 말 재고량과 다음 연도 1월 이월 수량을 확인하여 연도

14) A부, B부, C부, D부, E부, F부, G부

말 실적을 정리하고 이듬해 새로운 수불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착오 기록하여 [표 5]와 같이 약품 등 수불대장상의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감사를 받으면서 수불대장과 현품의 수량을 대조·확인할 때까지 이러한 오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표 5] 약품 등 수불대장 및 현품 이월 수량 차이 예시 "생략"

게다가 F부는 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20××. ×.에 입고된 새 약품이 남아있는데도 20××. ×.에 같은 약품을 추가로 구입하였으며, 나중에 구입(20××. ×.)한 약품을 먼저 사용하고 20××. ×.에 구입한 약품은 개봉조차 하지 않는 등 약품의 선입선출도 하지 않았다.

더불어 B부는 [표 6]과 같이 약품 용기에 약품의 입고일 및 개봉일을 표기하지 않아 약품의 변질 또는 유효기간 경과 후 미개봉 상태로 폐기될 우려를 낳았으며, E부, F부는 [표 6]과 같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약품을 같은 약품으로 오인하여 개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수불대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록하는 등 약품 등의 재고관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표 6] 대장 혼용 기재 약품 및 입고일·개봉일 미기재 약품 등 예시 "생략"

그 결과 약품 등의 수요 예측 및 보관 기한에 따른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불대장 기록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였으며, 오기, 오인·통합, 이월 처리 오류 등 연구실 내 약품 등 관리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가.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실 안전 및 시약 재고관리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가능한 부분은 현장 조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차원의 공통기준 정비와 전산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며,

시약 재고관리 분야는 업무 담당자의 재량권 영역으로 보지 않고 전 부서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된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효기간 경과 약품에 대하여 재고관리 및 폐기절차가 미흡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해당 약품이 실제 시험검사에 사용된 사례는 없으며 이를 계기로 관리 절차 전반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관련부서 의견

A부 등 7개 부는 지적사항이 일부 부서별 사례의 형태로 나타났으나 본질적으로는 연구원 내부의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 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며,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교육을 직접 주재하여 재고관리 실무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실제 재고와 대장 정합성 확인, 장기 미사용 약품 점검, 유효기간 경과 약품 처리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G부는 특정 부서의 개별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기관 전체의 안전관리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 연구실 내 음식물 보관 금지, 통로 물품 적치 금지, 안전구획 표시, 정리정돈 유지 등 기본 수칙을 전 부서에 안내하고 공통 점검 항목으로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실 설치·운영 및 약품 등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에 대해 「경기도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기관경고」 조치하오니,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하시고 약품 등 구입・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연구실 운영 위반 사항 조치, 약품 등의 입・출고 및 재고 현황 정리 등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각 부서별 약품 관리자 지정 등으로 약품의 수량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제 2026 - 10 호

기 관 경 고

기 관 명: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실 설치·운영 및 약품 등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경기도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엄중 「**기관경고**」 조치하오니,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

경 기 도 지 사

일련번호	13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보건환경 연구원 가부 (가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 이행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가부)

조치기관(부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가부)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가부(이하 “가부”이라 한다)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폐수배출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물환경보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15]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부칙(법률 제12949호, 2014. 12. 31.)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가부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7조의 시행일인 ☆☆☆☆. ☆. ☆.부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15)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구리, 납, 비소, 수은, 시안, 유기인, 6가크롬, 카드뮴, 등 총 33개 오염물질을 말함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및 납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 ☆. ☆☆.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 ☆. ☆.부터 시행되었음에도 가부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 ☆. ☆.부터 감사일인 ☆☆☆☆. ☆. ☆.까지 [표]와 같이 해당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였다.

[표] 가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현황 "생략"

그 결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배상 및 피해구제가 곤란할 우려가 있었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가부는 감사 기간 중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완료(보험기간: ☆☆☆☆. ☆. ☆. ~ ☆☆☆☆. ☆. ☆., 보험금액: 금 ☆☆, ☆☆☆원)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 앞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14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보건환경 연구원 가부 (가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가부)

조치기관(부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가부)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가부(이하 “가부”라 한다)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라 [표 1]과 같이 ☆☆☆☆. ☆.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현황 “생략”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부는 폐수배출량 등 시설의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 상

수도 사용량을 상수도 유량계 검침 등 확인 절차 없이 임의로 산정하거나 추정한 수치를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서는 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부는 ☆☆☆☆. ☆.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 신고 후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운영일지에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 ☆. ☆.까지 폐수발생량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상수도 사용량을 [표 2]와 같이 상수도 유량계 검침값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기록하지 않고 임의로 추정한 상수도 사용량을 운영일지에 기록하였다.

[표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지설 운영일지 "생략"

그 결과 상수도 사용량이 실제 검침값과 불일치하게 기록되어 폐수발생량 산정의 기초자료인 운영일지 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저하되었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가부는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상수도 유량계 검침값 기록이 누락되었으며, 향후에는 관련 규정과 업무를 철저히 숙지하여 운영일지를 누락 없이 작성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 앞으로 「물환경보전법」 제3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에 상수도 유량계 검침값을 사실대로 누락 없이 기록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15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가부, 나부 (가부, 나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수질 시험·검사의 표준처리기간 준수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가부, 나부)

조치기관(부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가부, 나부)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가부 및 나부는(이하 “수질 시험·검사 부서”라 한다)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수질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의2 제7항에 따르면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의뢰, 시험·검사 등의 기록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이하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환경시료에 대한 시험이 완료된 때에는 시험·검사기록 및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적정하게 시험이 수행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의뢰부서(기관) 또는 의뢰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시험성적서의 작성 및 통보는

[표]와 같이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표준처리기간 내 이루어져야 하며, 의뢰받은 항목 중 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다만, 불가피하게 표준처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일수를 산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항목 중 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항목의 시험을 완료한 후 함께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표]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표준처리기간 "생략"

따라서 수질 시험·검사 부서는 의뢰받은 시험항목 중 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의뢰자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표준처리기간[16]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일수를 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수질 시험·검사 부서는 시·군 등 점검기관으로부터 폐수 및 하수 등의 오염도 검사를 의뢰받아 해당 시료의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점검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시료 중 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있는 시료 ☆☆건에 대하여 별지의 [별표]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표준처리기간 미준수 현황"과 같이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표준처리기간을 최소 ☆일, 최대 ☆☆일 초과하여 의뢰기관에 시험성적서를 통보하였다.

그 결과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표준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시험·검사 업무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저해하였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가. 가부 의견

가부는 인력 부족과 검사 수요 증가 등으로 기준 초과 항목 통보가 지연되었으

16)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별표 2] 비고 1에 따르면 표준처리기간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소요되는 기간이며, 접수일 13:00시 이후 접수된 경우에 한하며, 공휴일 및 휴무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고의는 없었으며 향후 업무 처리절차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나부 의견

나부 하수 및 가축분뇨는 우선 통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전체 시험 완료 후 일괄 통보하는 과정에서 표준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고의는 없었으며 향후 업무절차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 앞으로「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라 수질분야 시험·검사의 표준처리기간을 준수하여 시험성적서가 지연 통보되지 않도록 시험·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지]

[별표]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표준처리기간 미준수 현황 "생략"

일련번호	16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1,331,56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가부 등 3개 부서 (가부 등 3개 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가부, 나부, 다부)

조치기관(부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가부, 나부, 다부)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가부, 나부, 다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및 「경기도 공무원 복무규칙」 등에 따라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 등의 휴가를 부여받고 근무상황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26. 6. 23. 대통령령 제3644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조의7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무급휴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자녀[17]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고 되어 있다.

17)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표 1] 가족돌봄휴가 사유 “생략”

그리고 구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2026. 7. 21. 행정안전부예규 제37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Ⅷ-4-라-(6)에 따르면 부서장은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어린이집등의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표 2]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사혁신처 누리집 “복무제도 안내”의 “자주하는 질문” 중 가족돌봄휴가 관련 답변 내용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알림장, 학교공문, 병원진료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표 2] 가족돌봄휴가(유급) 승인시 증빙서류 “생략”

따라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공무원들은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부모 알림장,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등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해당 공무원의 부서장 등 결재권자는 유급 및 무급 가족돌봄휴가 인정 요건 등을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한 후 가족돌봄휴가 사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직원에 대하여 2023년부터 2026년 5월까지 가족돌봄휴가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 3]과 같이 A, B는 자녀 조기하원, 부모돌봄 등의 사유가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으며, C 등 ○명은 특정 일자에 사용한 유급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증빙자료를 감사일 현재(2026. 7. 10.)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다.

[표 3] 가족돌봄휴가(유급) 사유 등 부적정 내역 “생략”

그 결과 긴급하게 가족돌봄이 필요한 사유 등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특별휴가가 부적정하게 사용되었고, 연가로 사용하여야 할 휴가를 유급 특별휴가로 처리함

에 따라 연가보상비 총 1,331,56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가부, 나부, 다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증빙서류 확인의 중요성을 인지하였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증빙서류 제출 기준을 안내하고, 향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복무 관리와 교육을 실시하고, 가족돌봄휴가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위반하여 [표 3]과 같이 가족돌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C 등 ○명에 대하여 연가보상비 총 1,331,560원을 회수하시고,

○ 8시간 미만 가족돌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D, E, F, B에 대해서는 해당 휴가 사용분을 연가로 처리하여 연가일수에서 차감하는 등 근무상황부를 정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17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가부 (가부)	처분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수의계약 배제대상 확인 소홀로 인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가부)

조치기관(부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가부)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가부(이하 “가부”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 등”이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⑥항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으

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 1.-나.-9)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표 1]과 같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등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생략”

아울러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 1.-나.-11)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되며, 각서[18]를 제출받아 우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후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각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부는 “20××년 나부 ○○ 물품구매” 계약을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인 □□기업(대표자: A)이 경기도☆☆센터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을 사유로 20××. ×. ×.부터 20××. ×. ×.까지 수의계약 배제 처분을 받았는데도 온나라시스템 문서등록대장이나 e-호조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수의계약 배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각서만 제출받아 [표 2]와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수의계약 배제 조치 현황 “생략”

1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명시됨

그 결과 수의계약 배제 기간 중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저해하였다.

4. 관련자 의견

◎◎◎은 앞으로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뿐만 아니라 관련 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관련 법령과 계약집행 기준을 철저히 숙지·준수하여 적정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 앞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의 수의계약 배제 여부 등 계약 체결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관련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18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가부 등 4개 부서 (가부 등 4개 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업무 처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가부, 나부, 다부, 라부)

조치기관(부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가부, 나부, 다부, 라부)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가과[19](이하 “가과”라 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나부(이하 “나부”라 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다부(이하 “다부”라 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라부(이하 “라부”라 한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20](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 구매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 시 최초 입찰 참가자격 확인 부적정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

19) ○○○○. ○. ○. 조직개편으로 가과에서 가부로 변경

2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지정할 수 있음

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단서[21]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2]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다부는 재공고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하고, 계약부서인 가과는 계약상대자가 최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 참가자격 등 계약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경쟁제품인 실험용세척기[23]를 구매하기 위해 다부는 “20××년 다부 내자장비(실험용세척기) 구매”계약을 20××. ×. ×. 경기도 나과[24]에 의뢰하였고, 이에 경기도 나과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25]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두 차례에 걸쳐 나라장터에 물품구매 입찰공고[26]를 하였다.

21)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22)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추정가격 1천만 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
23)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음(세부품명번호: 4110320201)
24) 경기도 소속기관의 물품 구매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음
25) 세부품명: 실험용세척기(411032020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그런데 재공고에도 입찰이 성립하지 않았고, 이 경우 최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 참가자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하는데도 다부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를 계약상대자로 하여 내부결재[27]를 받은 후 20××. ×. ×. 가과에 계약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가과는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입찰공고상의 참가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표 1]과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2021년 다부 내자장비(실험용세척기) 구매 계약 현황 “생략”

그 결과 최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직접생산 확인 및 검사 소홀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28]하거나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다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 등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6) 경기도 입찰공고 제○○○○-○○○호(○○○○. ○. ○○.) 및 제○○○○-○○○호(○○○○. ○. ○.)
2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다부-○○○○호(○○○○. ○. ○○.)
28) 판로지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라부 및 나부는 경쟁제품 조달계약 체결 시 직접생산확인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도 실제 직접 생산한 제품이 납품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경쟁제품인 실험용세척기를 구매하기 위해 나부는 [표 2]의 연번 1과 같이 “20××년 실험용세척기 구매(나부 가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해당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직접생산자가 아닌 ㈜◇◇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경쟁제품(실험용세척기) 구매 계약 현황 “생략”

그리고 나부는 [표 2]의 연번 2와 같이 “20××년 나부 내자장비(실험용세척기) 구매”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통해 직접생산 여부는 확인하였으나, 계약에 체결된 이후 20××. ×. ×.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사에서 구매한 완제품[29]을 납품하였는데도 직접생산된 물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검사를 완료[30]하고 납품을 승인하였다.

그 결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 법령의 취지를 저해하였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다부, 나부, 라부는 관련 법령과 계약 절차를 더욱 충실히 숙지하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학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물품 구매를 추진하는 경우 입찰조건과 계약방식의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및 계약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29) ◎◎◎◎ 가전제품 제조사인 ‘☆☆☆☆’사에서 생산한 실험용세척기(모델명: ◆◆▽▽▽▽)
30)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나부-○○○○호(○○○○. ○. ○○.)

제시하였고, 가과는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 참가자격과 계약조건을 계약 체결 전에 관련 시스템과 증빙서류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 앞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 방법의 적정성, 직접생산 여부 확인 및 계약이행 검사 등 계약업무 전반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19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조치기관(부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등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 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31]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2]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 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한편,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는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경쟁제품(□□□, ○○○, △△△△△, ▽▽▽▽▽ 등)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직접 생산 여부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31)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제2025-○○호)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에는 □□□, ○○○, △△△△△, ▽▽▽▽▽ 등을 포함

32)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동물위생시험소는 [표]와 같이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 □□□(□□□) 구입” 등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상대자가 해당 경쟁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납품하였는데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검수하였다.

[표] □□□ 계약 체결 현황 “생략”

그 결과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판로지원법의 취지를 저해하고, 성실하게 직접 생산하는 다른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동물위생시험소는 계약 추진 과정에서 직접생산 제도의 적용과 계약이행 절차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관련 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반영한 업무처리 방침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계약 및 검수 과정에서 관련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내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 앞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20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선금 보증서 갱신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조치기관(부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지방회계법」에 따라 “□□□□□□□(□□□/□□□ □□□□□) □□ □□□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계약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지방회계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르면 공사·제조 또는 용역의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제13호에 해당

하는 선금급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33], 이하 “계약 집행기준” 이라 한다) 제6장-제2절-1. 선금 지급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 집행기준 제6장-제2절-4. 채권 확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고,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6장-제2절-5. 선금의 사용과 정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는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물위생시험소는 [표]와 같이 “□□□□□□□□(□□□/□□□ □□□□□) □□

33) [시행 2020. 6. 15.]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0., 일부개정]

□□□ 용역” 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 ○○○의 현장평가 일정 지연 등으로 용역 준공기한이 당초 20○○. ○○. ○○.에서 20○○. ○○. ○○.으로 ○○○일 연장됨에 따라 당초 지급한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 보증기간을 연장된 용역 기간만큼 가산하여 연장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표] 선금 지급 계약 현황 “생략”

그 결과 대가 지급 시 제출받은 선금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채권 확보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동물위생시험소는 선금 지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선금 지급 여부와 보증서 보증기간을 연계하여 검토하는 절차가 부족했던 사항으로 향후에는 선금이 지급된 계약에 대해 계약기간 변경 또는 준공기한 연장이 있을 경우 선금 지급 여부와 보증서 보증기간을 함께 확인하여 필요한 갱신 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계약 업무 확인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 앞으로 선금을 지급한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채권 확보 조치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21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건설공사 추정가격 산출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조치기관(부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는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시험소 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일환으로 “□□ 공사”등 ○건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4]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에는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

34)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제외),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는 추정가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물품·공사·용역 등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추정가격으로 구분하고 있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에 따르면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 제출에 관한 구분 또한 추정가격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는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 설계서를 작성하고, 산출된 설계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비를 제외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한 후 해당 공사 계약 사항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물위생시험소는 [표 1]과 같이 "□□ 공사" 등 ○건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소요 공정과 품목, 수량 및 단가 등의 검토를 통한 설계금액 및 추정가격을 산출하지 않고, 관련 업체가 최저가 견적 금액으로 제출한 견적서를 그대로 추정가격으로 인정하였으며, 최저가 견적 금액의 산출내역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해당 금액으로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추정가격 산출 및 수의계약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동물위생시험소 건설공사 계약현황 "생략"

그 결과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한 건설공사 계약 과정의 신뢰성이 결여되고, 계약금액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동물위생시험소는 일부 공사에서 추정가격 산정 절차를 누락하고,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와 확인 절차가 부족했던 점 등 감사

지적사항을 인정하며, 향후에는 관련 전문직렬(시설직 등) 담당자를 검토자로 지정하여 산출 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 앞으로 건설공사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정가격을 산출하여 계약방법을 적용하고, 건설사업자가 제출하는 견적 금액에 대한 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22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등의 정산 검토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조치기관(부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는 “□□ 공사” 및 “○○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및「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르면 시공자는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기성 또는 준공 검사 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를 산정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실제 제출된 비용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 지출된 비용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물위생시험소는 [표 1]과 같이 ○○ 공사를 준공하면서, 구입 품목 및 수량 등 세부 집행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등 실제 대금 집행 내역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데도 증빙자료 보완을 요구하거나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도급 내역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대로 지급하였다.

또한, □□ 공사를 준공하면서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준공서류에 환경관리비 집행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는데도 도급 내역에 반영된 환경관리비를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는 등 건설공사에 반영된 간접공사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동물위생시험소 건설공사 정산 검토 소홀 사례 “생략”

그 결과 ○○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 □□ 공사 환경관리비 ○○○천 원을 건설사업자에게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동물위생시험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의 정산 검토를 소홀히 한 사

실을 인정하며, 향후에는 건설공사 추진 시 관련 전문직렬(시설직 등) 담당자가 정산 대상 항목의 사용 내역과 증빙자료 등을 사전 확인토록 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 앞으로 건설공사 준공 시 건설사업자가 도급내역에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의 실제 집행 내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 공사”에서 부적정하게 집행된 환경관리비 ○○○천 원에 대해 환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23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의료폐기물 관리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조치기관(부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는 가축 질병진단 및 혈액검사 등 검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별도의 보관시설에 보관한 후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5.-나.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치아 제외) 및 손상성폐기물, 액체상태의 폐기물은 합성수지류 상자형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봉투형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

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올바로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의료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 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8조에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전까지 전용용기에 폐기물 정보가 담긴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수집·운반자는 태그 정보를 선택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하며, 배출자 및 수집·운반자는 폐기물 인계·인수 당일 폐기물 인계·인수 전송내역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에 따른 전용용기에 넣어 배출하여야 하고,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정보가 담긴 전자태그를 부착한 후 수집·운반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폐기물 인계 당일 인계·인수 전송내역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물위생시험소는 시험실에서 가축류 및 조류 등의 혈액 검사 후 발생하는 검사용기 등 조직물류폐기물[35]을 합성수지류 상자형 전용용기를 활용하여 배출하여야 하나 골판지형 상자형 용기 내부에 봉투형 용기를 넣은 형태의 용기에 담아 보관·배출하였고, 냉장시설에 보관된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자에게 인계·인수한 후 수집·운반자가 폐기물 인계·인수량 등을 전송한 내역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지 않는 등 의료폐기물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하였다.

그 결과 의료폐기물의 외부 노출로 인한 감염·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전산시

3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 ‘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르면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고 명시됨

스템을 활용한 상시 이력 관리를 통해 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관계 법령의 취지를 저해하였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동물위생시험소는 혈액검사 후 발생하는 검사튜브, 검사용기 등을 일반폐기물과 구분하여 의료폐기물로 보관·배출하였으나,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세부 분류 및 전용 용기 사용 및 올바로시스템 전산 확인에 대해 미흡하였다며, 감사 지적사항을 인정하고 향후에는 폐기물 처리 체계 및 시스템 확인 절차 등을 단계별로 재정비하고,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 앞으로 시험소 내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을 성상별로 정해진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 보관·배출하고,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 관리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24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조치기관(부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는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이하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이라 한다) 등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하여 방역, 검사, 실험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서류전형 심사 및 합격자 선발 부적정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제10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관리부서에서 채용하고,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으로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제10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시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실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 면접으로 하며, 실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은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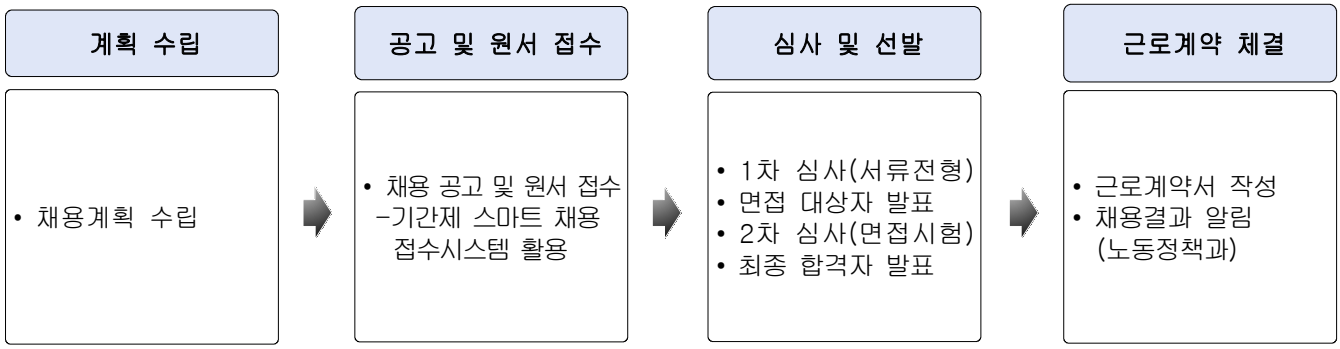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을 실시할 때 업무

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여 응시자를 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물위생시험소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표 1]과 같은 채용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2024년부터 감사일 현재(2026년 $월, 이하 생략)까지 기간제근로자(방역실험보조) 채용 서류전형을 실시하면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없이[36] 응시자 전원을 합격 처리하였다.

[표 1] 기간제근로자 채용 추진 절차도



자료: 소속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동물위생시험소의 2024년 및 2025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을 살펴보면, 서류전형 단계에서 '최종 선발 인원의 2~4배수(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범위 내외에서 선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표 2]와 같이 공고 내용과 다르게 최종 선발 인원 배수를 훨씬 초과하여 응시자를 합격 처리하였다.

[표 2] 연도별 서류전형 합격자 현황

연도	최종 선발 인원	응시자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인원 배수 기준[주)]
2024년	1명	16명	16명	최종 선발 인원의 2~4배수
2025년	1명	45명	45명	최종 선발 인원의 2~4배수
2026년	1명	26명	26명	-

주: 2026년은 채용 공고문에 최종 선발 인원 배수 기준 미기재
자료: 소속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6) 채용 관련 서류에는 면접시험 집계표 및 결정서만 존재하고, 서류전형 심사 결과를 기록한 문서는 확인되지 않음

그 결과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에서 요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채용의 신뢰성 및 공정성이 저해되었다.

3. 채용 공고문 작성 부적정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제9조의17 제4항에 따르면 공무직원 채용시험 담당 부서는 채용 공고에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 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9조의21 제2항에 따르면 채용 공고에 부정 합격자 합격 취소에 대한 내용[37]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표 3]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표 3] 결격사유(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제10조)

1. 피성년후견인 [전문개정 2023.8.28.]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써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자료: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발췌

그리고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제113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시험의 경우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 시 결격사유 등은 같은 규정 제9조의17, 제9조의21, 제10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점 및 동점자 처리 기준, 결격사유, 부정 합격자 합격 취소 등 채용 공고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내용을 공고문에 적시하여 채용 응시자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37)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거짓,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그 밖에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 등을 하여 합격한 자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물위생시험소는 202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을 작성하면서 [표 4]와 같이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에 따라 채용 공고 내용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채용시험 가점[38] 사항 및 동점자 처리 기준을 공고문에 누락하였고, 채용 공고문의 기타 유의사항에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일반적 문구만 있을 뿐, 부정 합격자 합격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제10조 결격사유 대상이 2023. 8. 28. 개정을 통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서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되었는데도 공고문에 결격사유를 작성하면서 개정 전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여 공고하였다.

[표 4] 연도별 채용 공고문 작성 부적정 현황 "생략"

그 결과 채용 응시자들에게 가점 사항, 동점자 처리 기준, 부정 합격자 합격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이미 개정된 결격사유 규정과 다른 내용이 공고되는 등 응시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해되었다.

4. 국가유공자 가점 적용 부적정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취업지원 대상자별로 만점의 10% 또는 만점의 5%를 가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제9조의17 제1항에 따르면 공무직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표 5]와 같이 각 전형 단계별로 채용시험 가점기준(별표 1)에 따른 가점을 부여

38) 2025년 및 2026년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채용 공고문 상에 가점 사항에 대한 안내가 없으나 기간제 스마트 채용 접수 시스템 우대사항 부분에 가점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되, 의사상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여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표 5] 채용시험 가점 기준(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별표 1])

법정가점	구분	부가점수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의사상자 가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5%

자료: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별표 1] 자료 발췌

그리고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제113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시험의 경우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은 같은 규정 제9조의17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는 국가유공자 가점 대상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물위생시험소는 2026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면접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점 대상인 응시자를 가점하면서 [표 6]과 같이 만점에 5%를 가점하지 않고 응시자가 획득한 총점 평균 점수의 5%를 잘못 가점하였다.

[표 6] 2026년 채용 면접시험 국가유공자 대상 응시자 가점 현황 "생략"

그 결과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법정 가점 혜택이 정당하게 부여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면접시험 결정서 등 서명 및 응시자 성명 누락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제9조의7 제4항에 따르면 채용시험 담당 부서는 채용 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채용 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13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시험의 경우 위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제103조 제1항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관리부서에서 채용하고, 채용 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과정의 전반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2024년 동물위생시험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결정서(2024. $. $.)를 확인한 결과, [표 7]과 같이 면접시험 결정서 상단의 시험위원 서명란에 시험위원 3명 중 1명(A 위원)의 자필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7] 시험위원 자필 서명 누락 현황(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결정서) “생략”

또한 [표 8]과 같이 2025년 동물위생시험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평정점수표에 응시자 성명이 누락되어 있는 사항도 3건이나 확인되었다.

[표 8] 면접시험 평정점수표 응시자 성명 누락 “생략”

그 결과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저해되고 향후 채용 관련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로서의 효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6. 관계기관 등 의견

가. 서류전형 심사 및 합격자 선발 부적정

동물위생시험소는 채용 절차상 미흡한 사항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향후 공고문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응시자별 자격요건 확인 및 심사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보존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채용 공고문 작성 부적정

동물위생시험소는 기존 서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개정 사항 반영여부와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최종 검토가 부족했던 실무상 착오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향후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표준 공고문안을 정비하는 등의 조치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국가유공자 가점 적용 부적정

동물위생시험소는 채용 면접시험에서 가점을 만점 기준이 아닌 취득점수 평균 기준으로 산정한 착오가 있었으나, 해당 가점을 정당하게 적용하였더라도 최종 합격자 결정이나 응시자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던 것을 감안해 달라고 말하면서 향후 가점 산정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담당자와 검토자가 이중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면접시험 결정서 등 서명 및 응시자 성명 누락

동물위생시험소는 면접시험이 시험위원 평가에 따라 진행되었고, 지적된 가점 산정 오류 역시 최종 합격자 선정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하면서 향후 면접서류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담당자뿐만 아니라 팀장 및 부서장이 함께 검토하는 절차를 운영하여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 앞으로,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25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1,215,76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조치기관(부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 소속 공무원들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및「경기도 공무원 복무규칙」등에 따라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 등의 휴가를 부여받고 근무상황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무급휴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자녀[39]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인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고 되어 있다[40].

39)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40) 구「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24. 7. 2. 대통령령 제346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복무규정”이라 한다)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인 경우에는 연간 2일까지 유급휴가로 하며,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와 해당 공무원이「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휴가로 한다고 되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음

[표 1] 가족돌봄휴가 사유

연 번	사 유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료:「지방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발췌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Ⅷ-4-라-(6)에 따르면 부서장은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어린이집 등의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표 2]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사혁신처 누리집 “복무제도 안내”의 “자주하는 질문” 중 가족돌봄휴가 관련 답변 내용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알림장, 학교공문, 병원진료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표 2] 가족돌봄휴가 휴가(유급) 승인시 증빙서류

연번	증빙서류
1	어린이집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2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3	유급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발췌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공무원들이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알림장, 학교공문,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등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해당 공무원의 부서장 등 결재권자는 유급 가족돌봄휴가 인정 요건 등을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한 후 가족돌봄휴가 사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2023년부터 감사일 현재(2026년 $월)까지 동물위생시험소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내역을 점검한 결과, A는 [표 3]과 같이 2023년 연간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가 일수인 10일을 초과하여 총 11을 사용하였고, 2023. $. $. 가족돌봄휴가는 유급 사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표 3] 가족돌봄휴가 사용 일수 초과 내역 "생략"

또한 [표 4]와 같이 B, C, D는 학교 셔틀버스 미운행, 육아, 학원 상담 등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고, A, E는 특정 일자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증빙자료를 감사일 현재(2026년 $월)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표 4] 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현황 "생략"

그 결과 긴급하게 가족돌봄이 필요한 사유 등에만 사용해야 할 특별휴가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었고, 연가로 사용되어야 할 휴가가 유급 특별휴가로 부여되면서 연가보상비 등 총 1,215,760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었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요건과 유급 인정 범위, 증빙자료 제출 기준에 대한 사전 확인이 충분하지 못한 점과 부서 승인 단계에서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 등 복무 관리상 미흡한 사항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향후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사용 사유, 유급·무급 구분 및 증빙자료 첨부 확인을 사전에 철저히 하고, 부서 승인 단계에서 관리자와 복무 담당자가 관련 기준을 재차 검토하도록 내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해 지속적인 복무 관리와 교육을 시행하고 가족돌봄휴가에 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등을 위반하여 [표 4]와 같이 가족돌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A 등 4명에게 연가보상비 등 총 1,215,760원을 회수하시고,

○ 8시간 미만 가족돌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E, C, D는 연가일수에서 차감하는 등 근무상황부를 정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26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통보(시정완료)

제 목 **공용차량 처분 후 차량 보험료 세입 미처리**

소관기관(부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조치기관(부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는 보유·관리 중인 공용차량의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기존 보유 차량의 불용 결정, 매각, 폐차 처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공유재산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상법」 제649조 재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는 불용 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세입 처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물위생시험소는 [표 1]과 같이 2024년부터 감사일 현재(2025년 $월)까지 공용차량을 매각(폐차 포함) 처분하면서 보험회사에 환급받아야 하는 차량 보험료 총 1,040,540원을 청구하고 세입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1] 공용차량 보험료 세입 미처리 현황 “생략”

그 결과 세입으로 확보해야 할 차량 보험료 환급금 1,040,540원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다만, 동물위생시험소는 감사기간 중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위반 사실을 시정하기 위해 공용차량 매각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청구하였고, 미처리한 보험료를 전액 세입 처리하였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동물위생시험소는 감사기간 중 지적사항을 확인한 즉시 보험회사에 환급금을 청구하여 미처리된 보험료 전액을 신속히 세입 조치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

발하지 않도록 공용차량 폐차・매각・말소등록 등 차량 변동 사항 발생 시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 발생 여부 및 세입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미경과된 차량 보험료를 환급받고 세입 조치(2026. $. $.~$. $.)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앞으로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시정완료)]**

일련번호	27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237,17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인재개발원 (가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인재개발원 (가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인재개발원 (가과)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인재개발원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 소속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및 「경기도 공무원 복무규칙」 등에 따라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 등의 휴가를 부여받고 근무상황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무급휴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자녀[41]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인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고 되어 있다[42].

41)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42) 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24. 7. 2. 대통령령 제346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복무규정”이라 한다)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인 경우에는 연간 2일까지 유급휴가로 하며,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와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휴가로 한다고 되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음

[표 1] 가족돌봄휴가 사유

연 번	사 유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료:「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발췌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Ⅷ-4-라-(6)에 따르면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어린이집등의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표 2]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사혁신처 누리집 “복무제도 안내”의 “자주하는 질문” 중 가족돌봄휴가 관련 답변 내용에 따르면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알림장, 학교공문, 병원진료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표 2] 가족돌봄휴가 휴가(유급) 승인시 증빙서류

연번	증빙서류
1	어린이집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2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등
3	유급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발췌

따라서 소속 공무원이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알림장, 학교공문,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등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해당 공무원의 부서장 등 결재권자는 유급 가족돌봄휴가 인정 요건 등을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한 후 가족돌봄휴가 사용의 승인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2023년부터 감사일 현재(2026년 5월)까지 가과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내역을 점검한 결과, [표 3]과 같이 □급 A, △급 B는 고교진학 원서접수, 학원동행 등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고, □급 A는 특정 일자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증빙자료를 감사일 현재(2026년 7월)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표 3] 가족돌봄휴가 사유 등 부적정 내역 "생략"

그 결과 긴급하게 가족돌봄이 필요한 사유 등에만 사용해야 할 특별휴가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었고, 연가로 사용되어야 할 휴가가 유급 특별휴가로 부여되면서 연가보상비 등 총 237,170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었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가과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이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없으며, 향후 가족돌봄휴가 등 각종 휴가 처리 시 총무과 관련 공문 및 복무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여 휴가 사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누락 없이 첨부하는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인재개발원장은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해 지속적인 복무 관리와 교육을 시행하고 가족돌봄휴가에 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위반하여 가족돌봄

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A에게 연가보상비 등 총 237,170원을 회수하시고,

○ 8시간 미만 가족돌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A, B는 연가일수에서 차감하는 등 근무상황부를 정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28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118,66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 인재개발원 (가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당직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인재개발원(가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인재개발원(가과)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인재개발원은「경기도 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재택당직을 실시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경기도 공무원 복무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12조에 제1항에 따르면 당직(재택당직을 포함)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고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날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43] 제5장 Ⅵ. 7. 다. 3).에 따르면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의 경우 초과근무수

43) 행정안전부예규 제357호(2026.1.20.) p351

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당직(재택당직 포함)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는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한 시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경기도인재개발원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 A 등 총 3명이 재택당직 근무시간과 중복하여 시간외근무수당 118,66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표] 재택당직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현황 “생략”

4. 관계부서 의견

가과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할 의도가 없었음을 고려해 줄 것을 바라며, 향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인재개발원장은**

○ 당직근무한 시간에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118,66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외근무수당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